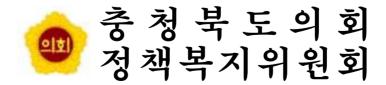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0회 임시회 2016. 9. 9.(금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436 2016.09.09.(금) 산 업 경 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인수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8월 19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8월 29일

(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-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인수 의원)
 - 가. 제안이유
 -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 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.
 - 나. 주요내용
 -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
- 출연.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(안 제4조)
-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(안 제5조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·개발지원(안 제7조)
-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(안 제8조)
-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(안 제9조)
- 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 - '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'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 의견 요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「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"농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3. "농촌융복합산업"이란 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4. "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"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 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제4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내 출연·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판로지원)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
 - 2.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·판매 또는 사후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
 - 3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에 관한 사업
 - 4.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
 - 5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
 - 6.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공동사업지원)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,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연구·개발지원)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·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·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8조(융자)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에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.
 - 1.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·가공설비 구축 사업
 - 2.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
 - 3. 농산물 직판사업
 - 4.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,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따른다.
- 제9조(전문교육)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 북도자치연수원,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3. "농촌융복합산업"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등 제조업, 유통·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4. "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"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· 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(이하 "시·도계 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・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
 - 2.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
 - 3.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,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 - 4.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
 - 5.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
 - 6.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시 ·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·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·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은 시·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·군·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(이하 "시·군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·농촌발전,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⑤ 시·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·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·도지사"는 "시장·군수"로, "시·도계획"은 "시·군계획"으로,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은 "시·도지사"로 본다.
- ⑥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각각의 시·도계획 및 시·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15조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시·도계획 및 시·군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추진 사업의 명칭
- 2.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
- 3.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
- 4.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
- 5.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
- 6.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
- 7.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
- 8.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)

- 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■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농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가. 읍·면의 지역
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5조(사업지원)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농 · 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
- 2.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
- 3.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
- 4.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
- 5. 농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
- 6.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4조(농촌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), 제5조(판로지원) 및 제6조(공동사업지원) 근거 에 따른 필요한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4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 항에 따라 도내 출연·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)

유영 등에 필요한 지원

나. 추계의 전제 :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1개소

다. 추계결과: 2016년 ~ 2020년까지 총 4,000백만원 정도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50%, 도비 5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백만워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)
세 출	4,000	800	800	800	800	800
농촌융복합산업지 원센터 지정 등	4,000	800	800	800	800	800

6. 작성자 :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금한주(☎ 220-3510)